大田廣域市第5回公債條例廢止條例案

議案番號サラン

提出年月日: 1995. 1. .

提 出 者:大田廣域市長

1.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 이 條例는 大田廣域市의 新設道路 鋪裝 및 擴張 被服工事에 所要되는 資金의 充當을 爲한 公債發行에 必要한 事項을 規 定하기 爲하여 1981. 2. 20 制定 하였음.
- 現行 地方財政法 第8條 第2項에 의거 商法 第487條에 地方 債證券의 償還請求權을 10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 가 完成하도록 規定하고 있어.
- 이 條例는 最終(2次) 償還開始日이 1984. 3. 1로 規定하고 있는바 償還時效가 消滅되어 이 條例 目的이 達成되었으므로 廢止코자 함.

2. 參考事項

- 가. 關聯法規(別添)
 - o 地方財政法 第8條
 -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7條 내지 第20條
 - 商法 第479條, 第484條, 第485條, 第487條

나. 公債發行 現況 및 償還開始日

공	채 발	행	공 채 매 출	최종상환 (2차)
권면금액	매 수	금 액(천원)	이 시 비 호	개 시 일
계	60,000¤H	1,200,000	-	
10,000원권 50,000원권 100,000원권	50,000 6,000 4,000	500,000 300,000 400,000	1981. 3. 1 12. 31	1984. 3. 1

다. 現行 大田廣域市 第5回 公債條例: 別添

대전광역시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제5회공채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제5회공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1. 지방재정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20조
- 2.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제487조
- 3. 폐지조례(대전광역시 제5회 공채조례)

地方財政法

第8条 <u>元方任의 발행)</u> ①共可任의 발표, 표수의 任益, 제품의 발控, 監禁에 관 단 학원하여 및 等務取扱機能은 大程교학으로 및 1학.

②조 1 公의 地方债务 證券沒得의 방법에 의한 地方法(이화 "地方法證券"이라 한다)의 불법에 곤하여는 商注 第479後,第485章 第485章 및 第487章의 規定을 準用하다. 이 경우 高法의 規定을 "社院"는 "北方信證券"으로, "社信信者"는"地方保証者"로, "债券"은 "验券"으로 보고, 第479章 "記名社位"는 "記名地方保证券"으로, "社信原源"는 "地方保证券原源"도 "年7 분 "地方保证券"도 "年7 분 "地方保证券"도 "年7 분 "地方保证券"도 "年7 분 "地方保证券"도 "年7 분 "地方保证券》 "

地方財政法 施行令

제7조 (<u>지방체의 충유통</u>) ①배 제8조기 1단의 규칙에 되는 지민부의 중유는 다음 자료의 같다.

- 기반처중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받인의 일반에 되다며 차업하는 기방체를 달리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드발한다.
- 카입금: 지방자치단체가 존서에 의하여 하당하는 지방체문 말았다. 외국경 부·국제기구등 외국으로부터 차관(눈물차관을 프립한다)를 모임하는 경우를 프립한다.

②제1합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채우이랑에 잘돌하여 지방채공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저렇채를권한 말했다거나 국내에서 외국문하로 표시 된 지방채충권을 말했다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한관리법당에서 걸어는 건화에 따라야 한다.

제 \$ 조 (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개중권의 발행) ①저망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개중권을 발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대한 지방대중 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당칭
- 2. 지발처중권의 발행층액
- 3.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 4. 지방지증권의 인면공액
- 5. 지방채충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 6. 지방색증권의 이율
- 7. 지방색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금의 방법 및 기한
- 8. 지번째증권에 대하여 수회에 견쳐 분한납부한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급액 과 시기
- 9. 지방채증권을 기당식 또는 무기당식으로 한정한 매력는 그 뜻
- 10.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 11. 지방채종권의 용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백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백에는 그 뜻
- 12, 명의계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당·주소 또는 영업소
- 13. 지방체증권의 청약기한

②자방재증권의 모집에 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 1 항의 지방재증인성약석에 인수 하려는 지방재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당날인하여야 한다.

②지방되중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용호자는 지방되중권천약서에 용로가액을 기계하여야 한다.

④지방색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책을 위하여 제 1 당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 9 조 (발생총액인수의 경우의 독체) 제 8 조의 규정은 제약해 의하여 지방해당 관의 발생촌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해당 된 보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자방채종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터 대라다는 또한 작태.

- 제10조 (지반자는건 등으로에 그 방안들이에 인하고 우란 경우의 표표를 치방되충 권의 동모액이 지방되중된 성악되어 가지된 지방되중권의 발린근데이 달하지 못 한 점두에도 당해 기방되중권을 정답하지 한 것을 지방돼중권정약되어 가대한 비에는 그 몽드역으로서 당한 지방돼중권의 반원중액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 (남업) ①차방자식단계는 자판이승권의 도점이 완료된 때에는 지채없어 인수단에게 각 자남씨준권이 대하여 그 군에의 전액 또는 제1개의 남인을 자리 아 한다.
 - ②지방책증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기로 위탁한 처럼차지단체를 위하여 지수함의 편위를 한 수 있다.
- 제12조 (충권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내충권에 대한 전역의 남업이 완료 된 대에는 지체없이 중권은 발전하여야 한다.
 - ②자방채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가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1. 지방채증권의 번호
 - 제 8 조제 1 당재 1 호 내지 세 4 호 · 제 6 호 · 제 7 호 · 제 9 호 · 제 10호 및 제 12 호에 규정된 사항
 - 3. 지방채중권의 발행연원일
- 제13조 (배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대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제 8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제 6 호·제 7 호·제 9 호 및 제 12호에 규정 된 사항
 - 2. 저방책증권의 메풀기간
 - 3. 지방책증권의 백출가액
 - 4. 지방채증권대문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생호와 주소
- 제14조 (지방지증권의 배춘액이 그 중액에 달라지 못한 경우의 특례) 배춘기간내 에 대충한 저방적증권의 충액이 세13조의 급경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증권의 충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의 매춘을 중요한 것을 동 공고에 형시한 배에는 그 대순준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충덱으로 한다.
- 제15조 (기당식·무기당식간의 전환) 지방되면자는 증권을 기당식 또는 무기당신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당식의 중권을 무기당식으로, 무기당식의 존원은 기당식으로 한 것을 당해 지방되지만해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지난부클린원부) ①지방지수보내의 기방지수인는 변형하는 바이를 제방 개공원원수은 작성 ·비치하여의 한다.

②기업소의 중인을 발생한 경우의 자방대중인원부에는 다음 작회의 사항을 가지 하여야 한다.

- 1. 지방처음권의 번호
- 2, 제 8 조개 1 항재 2 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
- 3. 각 지방의근원의 답입금액과 답입연원일
- 4. 지방자준단의 발행연원일
- 5. 각 자랑치중권의 취득인원일
- 6. 원리금의 지금에 관한 사항
- 7. 지방됐건자의 성명과 주소

③무기당식의 증권을 발렌한 경우의 지방재증권원부에는 재 2 항재 1호 내지 제 6호에 규정된 사항의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 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방청중권의 추첨상환)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중권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머리 그 상환액·상환기일·주원일시·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채 1 항의 추천에 의하여 당첨된 지방채중권의 권면금액의 중 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이건충결의 경우) ①이건있는 무기정의 지방재중권을 상원하는 경우에 . 이권이 흩걸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개한다.

②제 1 항의 이건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건과 교환하여 공색역의 지급을 정 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외화지방책증권의 독대) 외국에서 외국동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책증권(이 하 "외화지방책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석과 꾸기명석간 의 전환, 의화지방책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체증권의 주험상환, 이권에 흡 결이 있는 의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동에 대하여는 이 영의 구정에 불구하고 기책지의 법정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

제90조 (공고방법) 지방치증권에 곤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동보 또는 일 간신문에 제지함으로써 한다.

商 法

第179章(記名社份의移籍) ①配名社份의(5)以色版符首的故名의住所を計價原面網記 版하고그拉名全價差에記載하지아니하면會起其他第三者에게對抗時間果찬다 ②第337能第2項의 規定은 配名社份의 移程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特徵 M-

第484條。受託合社의信服》 ①社伍募集의委託을받은合社는社保护者是馬하여社債의 佰교을받음에必要並設制上年七款對外의모든行馬者整征限이었다

②前項의台단가起價의價단을받은데에는應高없이그동을소告하고일고있는起價價품 예뻐하여는손돼요이물通知하여야한다

③前項目位認可社價框名上價券升相換하여值是額料支給多請求量全以中

第485條(2以上의委託合社가있는境盟의權限義務) ①社債募集의委託을받은會社가 2以上있을배에는二權限所屬하는行為는共同으로하여야한다

②前項의表記에各合社と社債指者の對하여巡告하여信型類是支給於義務內以中

第487條 (元初請求權의時效) ①继值의信亞請求權至10年間行使하지하自計型錯減時 效外完成整다

②第484段第 3 斯科請求權工前項과찰다

③社債의程子站前條第2項의請求配은5年間行使하지아니하면消放時效才完成한다

개정 1981. 9. 30 조례 제1073호 개정 1981. 3. 13 조례 제1201호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직할시의 신설도로 포장 및 확장 피복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제5회 공채(이하 "공채"라한다)를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공채 발행 총액) 공채는 총액 1,2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대전 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다.
- **제3조 (공채의 종류 및 가격)** ① 공채는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하고 권면 금액은 10,000원권, 50,000원권, 100,000원권의 3종으로 한다.
 - ② 권면 금액의 종별 발행 매수는 따로 시장이 정한다.
 - ③ 공채의 발행 가액은 권면 금액으로 한다.
- 제4조 (공채매출) ① 공채매출은 1981년 3월 1일부터 198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공채는 "별표2"공채소화 기준에 의하여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관, 이 전등록과 주소지 변경등록, 자동차 검사(갑, 을종)시 참가하여 소화한다.
 - ③ 이관, 이전 등록과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소화 기준의 1/2로 한다.
 - ④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채의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
- **제5조 (매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공채의 매출과 원리금상환업무는 대전 직할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위탁한다.
- 제6조 (상환재원)공채의 원금 및 이자는 도시계획세 세입 및 일반 재원으로 상환한다.
- 제7조 (상환방법) ① 공채의 원금은 2년거치후 2년간 매년 공채발행 총액의 2분지 1 해당액을 "별표 1"과 같이 균등 분할 상환한다.
 - ② 시의 재정 형편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당해년도 상환액을 초과 상환하거나 공채의 전부를 일시 상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원금 상환일은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때의 매출일로 하다.
- 제8조 (이자지급) ① 공채의 이자는 공채를 발행한 날로 부터 가산하여 매1년 에 권면 금액의 100분의 8의 단리로 계산하고 원금 상환시에 지급하되 소

정의 상환기간 만료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시의 재정 형편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기할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를 가산 지급한다.
- 제9조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장소) 공채의 원금 및 이자는 지급 시기가 도래된 것으로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금고에서 지급한다.
- 제10조 (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 ① 공채를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할 수 없다.
 - ② 오손의 경우에는 재발급 할 수 있으며 재발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채권자는 법원이 채권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1조 (공채의 시효) 공채의 원리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에 대하여는 지방 재정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부 칙(조례 제1047)

이 조례는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73, 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제5회 도로공채 상환표

(단위 : 천원)

ande	상 황	상	흰	o !	
상황년도	개시일	A I	र्ध	이 자	
গা		1, 440, 000	1, 200, 000	240. 000	
∤ >>>>>>>>>>>>>>>>>>>>>>>>>>>>>>>>>>>>	1983.				
		696, 000	600, 000	9 6, 000	
(1983)	3. 1		_		
2차상황	1984.				
		744. 000	600, 000	144. 000	
(1984)	3, 1				

* 520/13: राम्प १४१६ शर (अर एकप्त) ना या १०००कि

(별표 제2호)

도 로 공 채 소 화 기 준

(단위 : 천원)

₹	ñ	대당급역	ਸ਼	ヹ
자동차	O 숭용(자가용)			
신규동목	1, 000cc ol th	200		
	1. 500cc 01 8	400		
	2. 000 -	800	} 	
	2. 001cc 이 상	2. 000		
	대행버스	500		
	소형버스	300		1
*	○ 화용(자기용)			
	1 본 이하	100		
	2. 5본 이하	200		
	4.5끈 이하	400		
8	8 본 이상	500		
	8.1본 이상	700	¥-	
	ㅇ 명업용			
	버 스	200		
1	백 시	100		
	회품 0.5 - 4.5분	100		
	4.6본 이상	200		

○ 자동차 이관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신규등록의 1/2)

(단위 : 친원)

7	Ħ	대당금예	ы	고
자동차이건	O 숭용(자가용)			
등록, 변경	1, 000cc ○] 8}	100	i	
등록 (신규	2. 000ec -	200		
등목의1/2)	2. 001cc 이상	1, 000	İ	ti.
	대형버스	250		
	소형버스	150		
	O 화문(자가용)			
	1 본 이하	50		
	2, 5본 이하	100	l	
	4,5본 이하	200		
	8 본 이하	250		
	8.1분 이상	350		
	૦ લીધી 8		İ	
	버 스	100		
	택 시	50		
1	화품 0.5 - 4.5본	50		
	4.6본 이상	100		

ㅇ 자동차검사(갑,을종)

(단위 : 천원)

7		분	대당금액	R)	고
자동차검사	O 숭용(자가용)				
갑. 울중	1. 500cc ol 8		50		
	1.500cc 초파		80		
	o 버스(자가용)		10		
	ㅇ 화품(~)		10		٠
,	o 영업용(승용, 화문)		10		